SHIN&KIM
법무법인(유) 세종

대법원 2026. 5. 8. 선고 2024다321829 판결

주식양수인(양도담보권자 포함)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,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이러한 하자 있는 주주 지위를 전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속 주주총회결의 및 신주발행 역시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1. 사안의 개요

비상장회사인 피고 회사(주권 미발행)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망인이 2021. 12. 15. 갑자기 사망하였다. 이에 회사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망인 및 관계회사 J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00주(발행주식 전부)를 양수한 H, O(이하 '**H 등**')는 주식양수 이후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, 자신들이 적법한 주주임을 전제로 서면결의를 통해 G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(2022. 1. 3.자 결의), G로 하여금 H 등을 주주로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하였다.

이후 망인의 자녀 및 J사가 자신들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순차로 원고 **B, C**를 사내이사로 선임(2022. 2. 11.자 결의)하고, 원고 B에게 신주 200주를 발행한 뒤(2022. 2. 18.자 결의), 원고 **A**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(2022. 2. 22.자 결의). 이에 H 등은 2022. 3. 9.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, B, C 모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G를 재선임하는 결의(이하 '**이 사건 결의**')를 하였고,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

2. 하급심의 판단

- 1심은, H 등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주주이므로 2022. 1. 3.자 결의(G 선임) 및 이에 기한 명의개서가 적법하고, 반면 J사와 망인 자녀들이 한 후속 결의(원고 B, C 선임)는 주주 아닌 자에 의한 결의로서 부존재한다고 봄. **이에 원고들은 적법하게 선임된 바 없어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·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**.
-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이나, H 등이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한 점에 관하여, 피고의 유일한 이사인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수행할 자가 없었고, 망인의 상속인 등이 명의개서를 거절할 경우 H 등이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이는 **'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도 예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'**에 해당한다고 보아,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.

3. 대법원의 판단: 상고기각

가. 쟁점 및 관련 법리

-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, **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**(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 다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**극히 예외적인 사정**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며, **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**임. 한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,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(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참조).

나. 구체적 판단

- 대법원은, H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외적으로 피고 주식 100주를 보유하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,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**명의개서 없이 예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**고 보았음.
  (i) 2022. 1. 3.자 주주명부는 그 결의에 의해 선임된 G이 결의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적법한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,
  (ii) H 등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(2020. 6. 30.) 이후 결의 시점까지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,
  (iii) 유일한 이사의 사망만으로 곧바로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며,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이사 선임 청구 등 법정 절차를 거칠 수 있었던 점
- 따라서 H 등의 2022. 1. 3.자 결의(G 선임) 및 2022. 1. 26.자 결의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
- 다만, J사와 망인 자녀 측의 2022. 2. 11.자 결의(원고 B, C 선임) 역시 적법한 주주명부 기재 없이 이루어져 유효로 볼 수 없고, 이를 전제로 한 신주발행(2022. 2. 19.자) 및 원고 A 선임(2022. 2. 22.자 결의)도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함.
- **결국 원고들은 적법하게 선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·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**.

4.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

본 판결은 **주식양수인(양도담보권자 포함)이 명의개서 없이 예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**한 것으로, 유일한 이사의 사망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예외적 사정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,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 청구 등 법정 절차를 통해 명의개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. 아울러 이러한 하자 있는 주주 지위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속 주주총회결의·신주발행이 모두 무효·부존재로 귀결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.

① 회사(특히 소수주주·가족회사) 및 임원 입장:

유일한 대표이사·사내이사가 사망 등으로 궐위되어 명의개서·주주총회 소집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경우, 이해관계인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서면결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추후 그 결의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큼. 따라서 이 경우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이사 선임 등 법정 절차를 활용하여 명의개서·기관 구성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② 담보권자(금융기관·투자자 등) 입장:

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취득(양도담보)한 경우에도,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. 그러므로 주식담보 실행·권리보전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명의개서 이행을 확보하고, 명의개서가 거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

법원의 일시이사 선임 청구 등 절차적 구제수단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함.

③ M&A·투자 거래 실무:

비상장회사 지분투자, 담보권 설정, 경영권 인수 거래 등에서 대상회사의 주주명부 관리 현황 및 명의개서 이력은 거래종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실사 항목임. 명의개서가 지연·누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는 그 유효성이 사후에 다투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.

관련구성원

이원
변호사

02-316-4406
wlee@shinkim.com

최복기
변호사

02-316-1613
bgchoi@shinkim.com

문희춘
변호사

02-316-4051
hcmoon@shinkim.com

이숙미
변호사

02-316-4016
smlee@shinkim.com

이동헌
변호사

02-316-4263
dhelee@shinkim.com

조현재
변호사

02-316-1691
hjcho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